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[별표 1] <개정 2026. 2. 27.>

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(제3조제3항 관련)

1.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
2.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
3.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
4.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
5. 목책기(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)
6. 삭제 <2026. 2. 27.>
7. 삭제 <2008.2.22>
8. 콤바인
9. 곡물건조기
10. 삭제 <2006.2.9>
11. 삭제 <2010.2.18>
12. 동력중경제초기
13. 동력수확기
14. 삭제 <2021. 2. 17.>
15. 동력상토조제기
16. 정식기
17. 농업용 난방기
18.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
19. 농업용 방제기
20. 삭제 <2006.2.9>
21. 삭제 <2006.2.9>
22. 탈곡기
23. 동력휴집기
24. 삭제 <2006.2.9>
25. 비료살포기
26. 삭제 <2008.2.22>
27.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
28. 농산물 결속기
29.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
30. 농산물 세척기
31. 동력심경기
32. 삭제 <2008.2.22>

- 33. 동력구굴기
- 34.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
- 35.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
- 36. 삭제 <2006.2.9>
- 37.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
- 38. 육묘상자
- 39. 삭제 <2006.2.9>
- 40. 파종기
- 41. 농업용 스프링클러
- 42. 버섯재배소독기
- 43. 삭제 <2006.2.9>
- 44. 삭제 <2021. 2. 17.>
- 45. 삭제 <2006.2.9>
- 46. 삭제 <2006.2.9>
- 47. 삭제 <2008.2.22>
- 48. 삭제 <2006.2.9>